

의안번호	2201060
의 퇴 인	한지아의원
회 답 일	2024.08.19.
추계번호	24C1490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주류, 마약류 및 도박 등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고, 중독자에게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독 예방, 중독자의 치료·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 중독자 치료·회복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중독 예방 및 중독자의 치료·회복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안 제8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위원회의 구성 등)	○ 중독의 예방, 중독자의 치료·회복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7조제1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제7조제2항)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독의 예방, 중독자의 치료·회복 지원 관련 기관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중독의 예방, 중독자의 치료·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의무규정

1)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0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위 개정안은 현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4	안 제7조·안 제8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함(제8조제1항) －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으로 함(제8조제3항)	의무규정
5	안 제10조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등 중독 관련 실태조사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제2항)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1조 (중독예방교육의 실시)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은 소속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의 실시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12조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 및 중독의 폐해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함(제1항) ○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8	안 제13조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 또는 중독자 가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제2항에 따른 인력과 비용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9	안 제14조 (중독전문치료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판별과 치료·재활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중독전문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제1항) ○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중독전문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독전문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10	안 제15조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1. 중독의 예방 및 중독자의 치료·회복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2. 제16조에 따른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3. 중독의 예방 및 중독자의 치료·회복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제13조에 따른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5.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제18조에 따른 중독 관련 연구 및 개발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 그 밖에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11	안 제16조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3항) ○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12	안 제17조 (전문인력의 양성)	○ 국가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치료·회복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 국가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병원·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항)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3	안 제18조 (중독관련 연구·개발)	○ 보건복지부장관은 효과적인 중독의 예방 및 치료·회복 지원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안 제7조·안 제8조(국가중독관리위원회·위원회의 구성 등)	
5	안 제10조(실태조사)	
6	안 제11조(중독예방교육의 실시)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안 제12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8	안 제13조(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9	안 제14조(중독전문치료기관)	
10	안 제15조(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1	안 제16조(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2	안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13	안 제18조(중독관련 연구·개발)	

2. 상세 사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독²⁾ 예방, 중독자의 치료·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안 제8조, 안 제11조)

- 제정안은 중독의 예방과 중독자 치료·회복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현 시점에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 알코올 중독자, 마약류 중독자 및 디지털기기 이용 장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유사사례인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은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자문과 지원을 통해 수립되었음
 - － 유사사례를 준용할 경우,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도 기존 지원단의 자문을 통해 수립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존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등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통폐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또한 제정안에 따라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촉위원의 수당 지급과 연구용역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미만이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위원회)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위촉위원은 7인이며, 회의수당은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³⁾을 준용하여 1회 20만

2) 제정안에서의 “중독”은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를 말함

3)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원으로 하며, 추계기간 중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 (실태조사) 5년마다 니코틴 사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을 조사하는 “정신건강실태 조사”는 2021년 8억 2,200만원, 5년마다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에 대해 조사하는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⁴⁾는 2021년 기준 1억 9,400만원 예산을 배정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중독예방교육, 중독자에 대한 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안 제11조~안 제14조, 안 제15조~안 제 18조)

- 제정안에 따른 중독예방교육의 실시,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양성, 중독관련 연구개발 등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 조문을 이관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세부 업무 내용을 개별 조문으로 신설한 것이며, “중독”의 범위 확장⁵⁾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0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국비 50억 7,300만원(50%) 예산을 배정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각 센터별로 제정안에 따른 예방교육, 홍보영상, 자조모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내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독자에 대한 상담 실적은 아래 [표 1]과 같음

[표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실적

(2023.12월 말 기준, 단위: 명, 건)

구분	등록자수	일반상담 ¹⁾	단기개입 ²⁾	사례관리 ³⁾	재활프로그램
2020	8,114	52,280	22,283	171,274	30,139
2021	8,290	53,329	17,775	87,375	36,283
2022	7,875	88,275	46,870	171,171	64,412
2023	7,487	84,777	52,696	175,108	65,426

주: 1. 사례관리 인력당 적정 대상자 수 운영으로 등록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일반상담 등 전체서비스는 증가
1) 미등록자 상담 건수, 2) 조기선별결과 고위험군 3회 상담, 3) 등록자 개별상담 및 사정평가 건수
자료: 보건복지부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08.16.)으로 기존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변경됨

5) 제정안은 “중독”을 주류, 마약류, 사행산업 이용 또는 사행행위를 오용·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규정함

[표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내역(2024년 예산)

(단위: 천원)

구분	지원개소		합계	국비	지방비
	기존	신규			
합계	45	10	10,146,000	5,073,000	5,073,000
서울	3	—	512,968	256,484	256,484
부산	3	—	512,968	256,484	256,484
대구	2	—	341,980	170,990	170,990
인천	5	—	854,948	427,474	427,474
광주	—	—	0	0	0
대전	3	2	1,002,938	501,469	501,469
울산	2	—	341,980	170,990	170,990
세종	—	—	0	0	0
경기	8	2	1,857,884	928,942	928,942
강원	3	1	757,952	378,976	378,976
충북	1	1	415,974	207,987	207,987
충남	2	—	341,980	170,990	170,990
전북	2	2	831,948	415,974	415,974
전남	2	—	341,980	170,990	170,990
경북	2	—	341,980	170,990	170,990
경남	5	1	1,099,932	549,966	549,966
제주	2	1	586,964	293,482	293,482
유보액	—	—	1,624	812	812

자료: 보건복지부

□ 중독전문치료기관(안 제14조)

- 제정안에 따라 중독전문치료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고 국가가 중독전문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신규 중독전문치료기관의 지정 범위와 국가 지원 기준 및 금액 등이 정해져야 하나, 제정안은 구체적인 지정 및 지원 방안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기 지정된 중독전문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2024년 7월 기준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은 총 32개 기관(권역 9개), 지정 병상 수 335개이며, 2023년 12월 말 기준 알코올전문병원은 총 14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임
 - 제정안에 따라 사행산업 이용 또는 사행행위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병상 수를 늘릴 수 있으며, 또는 기존 중독전문치료기관의 가용 시설 및 인력 범위 내에서 치료 대상자의 범위만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